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2.04.26
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[신탁계약서]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	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	
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	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	
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	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	
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	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	
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	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	
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	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	
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	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그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	
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	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	
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	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	
계산한다.	산한다.	
② ~ ③ <생 략>	② ~ ③ <현행과 같음>	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	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	
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	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	
야 한다.	한다.	
1. <u>대차대조표</u>	1. <u>재무상태표</u>	
2. ~ 3. <생 략>	2. ~ 3. <현행과 같음>	
② <생 략>	② <현행과 같음>	
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① <생 략>	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① <현행과 같음>	
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	
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	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	
투자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대차대</u>	투자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재무상태	
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	
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	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	
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
1. ~ 3. <생 략>	1. ~ 3. <현행과 같음>	
③ <생 략>	③ <현행과 같음>	

[(간이)투자설명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		
요약정보					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갱신	-	- 총보수·비용 추가 등 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		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		
2. 집합투자기-	⁻ 의 기업공시서식	<신 설>	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X		

종류 및 형태	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
	갱신	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리글로벌거래 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(시행 령) 개정사항 반영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 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채권(취득시신용평가등급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.)	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 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 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		
		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	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법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	
나. 투자제한		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	• •		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 (연환산)	15.40%	15.41%		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(시행 령) 개정사항 반영	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	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 은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		

유리자산운용

		에 계상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에 계상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
13. 보수 및 수수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	
료에 관한 사항		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	
2. 연도별 설정 및				
환매 현황				
3. 집합투자기구				
의 운용실적	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	기준일 현재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
에 관한 사항	갱신			

<끝>.